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견본주택(<https://es1.lynn.co.kr>)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개관 이후라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수칙, 정부정책 등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견본주택(<https://es1.lynn.co.kr>)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인원,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견본주택과 병행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전화(043-877-8020) 등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문의 접종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음성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산업단지내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1.) 현재 음성군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여,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옵션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s1.lyn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2.10.31.(월)	2022.11.01.(화)	2022.11.07.(월)	2022.11.10.(목) ~ 2022.11.13.(일)	2022.11.18.(금) ~ 2022.11.20.(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제출	견본주택 방문 계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견본주택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79)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견본주택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79)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대표전화(☎043-877-802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건축과 - 제66524호(2022.10.20.)로 일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B4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0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2000723	01	084.8937	84A-1	84.8937	26.8695	111.7632	51.8365	163.5997	50.7868	193	6
		02	084.9957A	84A	84.9957	26.8924	111.8881	51.8989	163.7870	50.8478	435	12
		03	084.8426B	84B	84.8426	27.4006	112.2432	51.8053	164.0485	50.7563	247	6
		04	094.0977	94A-1	94.0977	28.9436	123.0413	57.4565	180.4978	56.2930	6	2
		05	094.1997A	94A	94.1997	28.9666	123.1663	57.5189	180.6852	56.3541	14	6
		06	094.0466B	94B	94.0466	29.4748	123.5214	57.4253	180.9467	56.2625	12	4
		07	101.7717	101A-1	101.7717	31.4088	133.1805	62.1423	195.3228	60.8839	52	-
		08	101.4717A	101A	101.4717	31.3412	132.8129	61.9592	194.7721	60.7045	52	-
		09	111.3657	111A-1	111.3657	33.5708	144.9365	68.0005	212.9370	66.6235	4	2
		10	111.0657A	111A	111.0657	33.5032	144.5689	67.8173	212.3862	66.4440	4	2
합 계											1,019	40

■ 청약주택형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8937	084.9957A	084.8426B	094.0977	094.1997A	094.0466B	101.7717	101.4717A	111.3657	111.0657A	
약식표기	84A-1	84A	84B	94A-1	94A	94B	101A-1	101A	111A-1	111A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사이버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표기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면적은 전용면적부분과 맞닿은 부분(중심면적-전용면적)으로써 각 해당 세대에 포함되며, 벽체면적 외 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m²)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총 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종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차(15%)	2차(15%)	3차(15%)	4차(15%)	
									계약시	2022-12-12	2023-08-10	2024-01-10	2024-10-10	2025-03-10	
084.8937	84A-1	193	16층 이상	80	52,453,400	273,546,600	-	326,000,000	10,000,000	22,6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97,800,000
			6-15층	80	51,391,460	268,008,540	-	319,400,000	10,000,000	21,94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95,860,000
			4-5층	16	50,345,610	262,554,390	-	312,900,000	10,000,000	21,29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94,010,000
			3층	6	49,299,760	257,100,240	-	306,400,000	10,000,000	20,64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92,160,000
			2층	6	48,253,910	251,646,090	-	299,900,000	10,000,000	19,99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90,310,000
			1층	5	47,208,060	246,191,940	-	293,400,000	10,000,000	19,34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88,060,000
084.9957A	84A	435	16층 이상	192	52,453,400	273,546,600	-	326,000,000	10,000,000	22,6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97,800,000
			6-15층	180	51,391,460	268,008,540	-	319,400,000	10,000,000	21,94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95,860,000
			4-5층	36	50,345,610	262,554,390	-	312,900,000	10,000,000	21,29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94,010,000
			3층	12	49,299,760	257,100,240	-	306,400,000	10,000,000	20,64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92,160,000
			2층	12	48,253,910	251,646,090	-	299,900,000	10,000,000	19,99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90,310,000
			1층	3	47,208,060	246,191,940	-	293,400,000	10,000,000	19,34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88,060,000
084.8426B	84B	247	16층 이상	112	50,619,140	263,980,860	-	314,600,000	10,000,000	21,46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94,740,000
			6-15층	100	49,605,470	258,694,530	-	308,300,000	10,000,000	20,83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92,670,000
			4-5층	20	48,591,800	253,408,200	-	302,000,000	10,000,000	20,2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90,600,000
			3층	6	47,578,130	248,121,870	-	295,700,000	10,000,000	19,57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88,930,000
			2층	6	46,564,460	242,835,540	-	289,400,000	10,000,000	18,94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86,860,000
			1층	3	45,550,790	237,549,210	-	283,100,000	10,000,000	18,31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85,190,000
094.0977	94A-1	6	3층	2	48,371,880	252,389,200	25,238,920	326,000,000	10,000,000	22,6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97,800,000
			2층	2	47,392,572	247,279,480	24,727,948	319,400,000	10,000,000	21,94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95,860,000
			1층	2	46,428,102	242,247,180	24,224,718	312,900,000	10,000,000	21,29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94,010,000
094.1997A	94A	14	3층	6	48,371,880	252,389,200	25,238,920	326,000,000	10,000,000	22,6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97,800,000
			2층	6	47,392,572	247,279,480	24,727,948	319,400,000	10,000,000	21,94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95,860,000
			1층	2	46,428,102	242,247,180	24,224,718	312,900,000	10,000,000	21,29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94,010,000
094.0466B	94B	12	3층	4	46,680,348	243,563,320	24,356,332	314,600,000	10,000,000	21,46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94,740,000
			2층	4	45,745,554	238,685,860	23,868,586	308,300,000	10,000,000	20,83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92,670,000
			1층	4	44,810,760	233,808,400	23,380,840	302,000,000	10,000,000	20,2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90,600,000

101.7717	101A-1	52	16층 이상	28	58,565,586	305,576,740	30,557,674	394,700,000	10,000,000	29,47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18,430,000
			6-15층	20	57,393,384	299,460,560	29,946,056	386,800,000	10,000,000	28,68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16,120,000
			4-5층	4	56,221,182	293,344,380	29,334,438	378,900,000	10,000,000	27,89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13,810,000
101.4717A	101A	52	16층 이상	28	58,565,586	305,576,740	30,557,674	394,700,000	10,000,000	29,47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18,430,000
			6-15층	20	57,393,384	299,460,560	29,946,056	386,800,000	10,000,000	28,68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16,120,000
			4-5층	4	56,221,182	293,344,380	29,334,438	378,900,000	10,000,000	27,89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13,810,000
111.3657	111A-1	4	3층	2	58,565,586	305,576,740	30,557,674	394,700,000	10,000,000	29,47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18,430,000
			2층	2	57,393,384	299,460,560	29,946,056	386,800,000	10,000,000	28,68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16,120,000
111.0657A	111A	4	3층	2	58,565,586	305,576,740	30,557,674	394,700,000	10,000,000	29,47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18,430,000
			2층	2	57,393,384	299,460,560	29,946,056	386,800,000	10,000,000	28,68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16,12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밸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밸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밸코니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해당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결社会效益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에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원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음성군) 거주자가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보다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음성군에 거주하거나 음성군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음성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청약 모두가 무효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 분	순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민 영 주 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음성군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 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종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자의 혼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증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록2)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10.31.(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2.11.01.(화)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금융인증서 등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유효한 금융인증서 등을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일반공급 구비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예비입주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및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준비속	직계준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타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서류 등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인적사항 필히 기입	
	○	위임장	당첨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d><td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정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tr>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정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정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자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거주신청자가 기타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정해진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제57조 제8항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 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1.07.(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1.10.(목) ~ 2022.11.13.(일) (10:00~16: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1.18.(금) ~ 2022.11.20.(일) (10:00~16: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79)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es1.lynn.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07.(월) ~ 2022.11.16.(수)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07.(월) 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2.11.18.(금) ~ 2022.11.20.(일) (3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79)	043-877-8020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input type="radio"/>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input type="radio"/>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input type="radio"/>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 불가
	<input type="radio"/>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하여 출력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input type="radio"/>		위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함.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들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0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준용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금액	Sh수협은행	1010-2261-3792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주)에서 계좌관리를 진행하여 현재 예금주는 코리아신탁(주)로 되어있으며, 향후 예금주가 사업주체로 변경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임.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기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로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관련 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당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대출이 알선이 불가 할 경우 계약자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 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5년 11월경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실외 주민운동시설] 등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을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됨

[단위 : 원, VAT 포함]

· 발코니 확장금액

주택형(약식표기)	금액	계약금 (계약 시)	종도금 (2023-04-10)	잔금 (입주 시)	비고
84A-1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84A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84B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94A-1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94A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94B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101A-1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101A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111A-1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111A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 ·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축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실별, 위치별 선택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축후 선택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발코니 확장세대 및 비확장세대의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재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흡통, 선흡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실외기설(하향식 피난구)에는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하층 상부세대부터 최상층 세대까지 상하부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관계기관의 요청 등으로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탑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선택안	에어컨 설치부위	금액	계약금 (계약 시)	증도금 (2023-04-10)	잔금 (입주 시)	비고
84A, 84A-1, 84B 94A, 94A-1, 94B	3대	거실, 주방, 안방	5,800,000	1,000,000	1,000,000	3,800,000	제조사 : 삼성전자 (공기청정기능 포함)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800,000	1,000,000	1,000,000	6,800,000	
101A, 101A-1 111A, 111A-1	3대	거실, 주방, 안방	5,800,000	1,000,000	1,000,000	3,800,000	제조사 : 삼성전자 (공기청정기능 포함)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800,000	1,000,000	1,000,000	6,800,000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10,300,000	1,000,000	1,000,000	8,30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건립세대 해당)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정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능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사이버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박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연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콘센트 등)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등기구 위치 고려 등의 이유로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연적이 상등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탑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에 각 1개소 기본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난방방용으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으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Sh수협은행	1010-2261-3831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준함.
-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주)에서 계좌관리를 진행하여 현재 예금주는 코리아신탁(주)로 되어있으며, 향후 예금주가 사업주체로 변경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품목명	84A, 84A-1, 94A, 94A-1	84B, 94B	101A, 101A-1, 111A, 111A-1	비 고
가구 및 인테리어	현관	중문	1,600,000	1,600,000	1,600,000
	상부 간접조명			300,000	
	거실	거실 및 거실복도 알판+간접조명+픽처레일	900,000	900,000	900,000
		대형 아트월타일(거실)	1,100,000	1,100,000	1,100,000
		거실 조명특화	1,100,000	1,100,000	1,100,000
	주방	고급주방특화	3,300,000	3,500,000	4,300,000
		주방팬트리	1,600,000	1,600,000	1,900,000
		주방장식장	1,500,000		
		주방 조명특화	700,000	700,000	700,000
	욕실	비데 일체형 양변기	500,000	500,000	500,000
	침실	고급형 안방 드레스룸	1,700,000	1,800,000	2,000,000
		침실 불박이장	1,200,000	1,200,000	1개소 기준(침실1, 침실2)
가전	광파오븐	LG	400,000	400,000	400,000
		삼성	400,000	400,000	400,000
	인덕션	쿠쿠	500,000	500,000	500,000
		삼성	700,000	700,000	700,000
	식기 세척기	삼성(12인용)	900,000	900,000	900,000
		LG(12인용)	1,300,000	1,300,000	1,300,000

* 고급주방특화(유상) 미선택시 상판은 MMA, 벽부는 타일, 사각싱크볼은 일반형 싱크볼, 고급수전은 일반 수전으로 시공되며, 팝업콘센트 및 간접조명은 설치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준함

• 패키지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항 목	84A, 84A-1, 94A, 94A-1	84B, 94B	101A, 101A-1, 111A, 111A-1	비 고
거실 패키지	거실 및 거실복도 알판+간접조명+픽처레일, 대형 아트월타일(거실), 거실 조명특화	2,900,000	2,900,000	2,900,000	
주방 패키지	고급주방특화, 주방팬트리, 주방장식장(84A,84A-1,94A,94A-1), 주방 조명특화	6,700,000	5,500,000	6,500,000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건립세대 해당)
- 해당주택형의 침실 블박이장 미선택시 벽면마감은 벽지로 시공됨
- 주방 및 일반가구 미선택시 일반도배 마감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대형 아트월 타일 선택 시, 납품자재 및 시공여건등에 따라 타일 문양 패턴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함.
- 비대일체형 양변기 미선택시 설치되는 양변기는 투피스 양변기로 설치됨
- 주방팬트리 미선택시 현장조명은 시공되지 않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구 분	납부 일정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증도금(2023-04-10)	잔금(입주예정일)
1010-2261-3831 (Sh수협은행)	코리아신탁(주)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80%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증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증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증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준함.
-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주)에서 계좌관리를 진행하여 현재 예금주는 코리아신탁(주)로 되어있으며, 향후 예금주가 사업주체로 변경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 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I	문	각 목문틀(사출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미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문), 시트지, 청호철물 일체	욕실문틀 하부씰,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II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비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III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냉매배관(안방+거실), 훌네트워크 관련설비(월패드 등)
IV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동림(몰딩포함)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및 해드, 기계환기설비
V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비단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VI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VII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반침가구(불박이장, 시스템장), 수납선반	
VIII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m², 원,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84A	84A-1	84B	94A	94A-1	94B	101A	101A-1	111A	111A-1	비 고
금 액	32,458,000	32,422,000	32,561,000	36,598,000	36,561,000	36,704,000	39,465,000	39,574,000	42,568,000	42,676,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종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품목은 해당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법에 의한 구조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 방수공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 품목 / 전기공사 ·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 · 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VIII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일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해당주택은 단지 배치상 별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충돌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당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 제기를 할 수 없음.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면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해당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을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단지 주변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서측에는 23m도로, 남측에는 21m도로, 북측에는 15m도로가 인접하여 있음. 단지와 인접한 도로 및 외부도로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택지조성 사업자(지구단위계획 사업주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당사업지 주변으로 방음벽 설치계획(또는 저소음포장)이 있고, 택지조성 사업자, 지자체에서 방음벽(또는 저소음포장) 관련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획변경 및 소음, 진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사업주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교육시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는 인근학교 임시배치될 예정이며,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일원 개발사업 지역은 공동주택 1BL부터 6BL까지 개발되는 사업으로 현 학구인 부윤초교에는 학생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신설 학교 설립전까지 유입학생 전체를 인근학교에 임시 배치(과밀운영 및 증축 필요)됨. 중학교는 대소중학교로 배정될 예정임 고등학교는 음성군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 지원 분산 배치 예정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해당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보류·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분양공고가 확정되어 입주시기가 가시화되고 학교 신설 수요가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함.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부 종양투자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설립이 지연, 변경, 취소 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일자와 개교시기는 다를 수 있고, 신설학교 설립 지역을 이유로 입주시기 조정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공동주택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는 설립예정이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음성군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바람. 신설학교 설립전까지 임시배치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대책(통학버스 운영 등) 등 통학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유입학생 초등학생은 산업단지 내 신설학교 설립 전까지 음성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인근 학교에 임시배치될 예정임. 산업단지내 신설학교 설립시기는 미정으로 계약자는 초등학생이 원거리로 장기간 임시배치되는 상황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환경 관련	인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서측, 북측, 남측에는 도로가 위치하며, 동측에는 완충녹지·복합 용지, 북·남·남서·북서측에는 공동주택 용지, 서측에는 초등학교 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소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사업부지 주변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출물(산업단지용지, 상업시설, 복합용지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모형도 및 카탈로그 등 총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선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지 인근 산업단지, 묘지(분묘) 등이 위치하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악취 등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지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지 동측 완충녹지상 보도와 단지 동측간 연결보행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성본산업단지와 협의내용으로 상세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서측, 남동측 어린이 공원은 성본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음성군 이관되었으며, 해당 어린이 공원에 대한 시설물계획, 유지보수 등 관리는 음성군에서 문의바람. 단지 북서측 교차로상 단지 서측 학교와 연결이 가능한 획단보도는 교통심의시 추가된 사항임. 단지 서측 초등학교 예정부지-단지 서측 23m 도로간 약 3m 방음벽이 설치됨.
	지구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해당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성본산업단지로서 향후 택지개발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해당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및 녹지 등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지구 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성본산업단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택지지구 준공완료시까지 공사 소음, 분진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및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개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 복합용지, 공동주택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접,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성분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흉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낌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 주변으로 사거리, 삼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단지 인접 공원(어린이 공원 등) 세부계획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원 출입구 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 수 있음. 각종 홍보물 등은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됨. 각종 광고·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함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시공 중 현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제시공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 될 수 있음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현된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해 개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도로, 철도, 건물, 기타 시설 등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흘통,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u>에어클린 시스템 및 린IoT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u> 린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성능개선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제품 및 기능은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 적용된 공기질관리통합시스템, 미세먼지센터 알림시스템(부대시설), 스마트홈시스템(홈IoT포함) 이용시 통화료 이외의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린IoT연동가전, 앤스피커, 무선AP 등의 장비 및 카카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전에 관련기관 문의 및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 방음벽, 엘리베이터 등 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탈레이터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출입구는 단지 남측 및 북측에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단지 남측에는 단지내 상가 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출입구가 설치됨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출입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소 등이 노출되어 일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재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전체동(10개동)의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내 402동, 404동, 406동, 409동, 410동 옥상층, 401동, 404동, 408동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종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자·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경관조명과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해충 등 생활권을 침해받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하시는 계약자는 허가 기준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중 공정, 현장여건, 주변환경,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최초의 기준과 최종 시공 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허가여부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주변의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복합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인해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충청북도 음성군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균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당 사업지 남측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2개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모든 책임은 공동주택 계약자에게 있음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균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남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꼭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각 동 주변 헨름, 쓰레기 보관시설 등의 위치를 확인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단지 주·부출입구 인근 가감속차로 적용으로 대지경계선 내 외부도로 및 인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주동의 지상층에 필로티 설치시 유효높이 2.6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됨.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출입구 문주는 남측 주출입구와 북측 부출입구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지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에 문주는 설치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출입구 및 문주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역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단지 내 단차로 인해 주차장 계획이 동별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オ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헨름 상부에 헌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는 2.7m, 지하주차장 차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은 2.3m로 설계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유효천정고는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개소·사양은 달라 질 수 있음.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북측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을 약 2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A/S센터로 무상 사용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입주민회의실,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동의 1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부대복리시설 중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은 지하층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 및 상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설치 구간은 옥상(공동주택 1층)에 배치될 예정이고, 공동주택 대지 내 설치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인접세대는 실외기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외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설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 관리주체는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함 근린생활시설에 에어컨설치와 환기구가 설치될 경우, 일부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계단시설 등이 추가 될 수 있음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계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공용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적법하게 설치될 예정임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충청북도 음성군과 체결할 예정임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신청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0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주동 남동측에는 문주, 드롭오프존(맘스스테이션), 경비실, 지하주차장 입구 등이, 주동 서측에는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이, 주동 남서측에는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계단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해당 저층부는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진동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설치와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호 라인 북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 4호 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등)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1층 재활용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0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주동 서측에는 방음벽, 초등학교 등이, 남서측 교차로 등이, 북서측 방음벽, 버스정류장, 외부계단 등이, 남측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남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계단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해당 저층부는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진동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설치와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호 라인 북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4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등)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0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1, 2호 라인 1층에는 어린이집, 3호 라인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는 방음벽, 외부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외부 버스정류장 연결 외부계단 등이, 주동 동측에는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계단, 선큰 등이, 주동 북측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등이, 주동 남측에는 경로당 뒷밭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4호 라인 북서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호 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4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등)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1층 어린이집, 경로당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2호 2층 전면에는 하부 시설물의 옥상이며, 해당 부분은 출입이 불가하며 이용할 수 없음. ▪ 1,2호 2층 전면의 하부 시설물의 옥상 바닥 복사열에 의한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404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서측에는 방음벽, 외부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등이, 주동 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계단, 썬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4호 라인 북서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호 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4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등)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0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서측에는 방음벽, 교차로, 외부도로, 외부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등이 주동 북측에는 외부도로, 외부계단 등이, 주동 동측에는 단지 부출입구 경비실, 문주,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북동측에 차량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호 라인 동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3호 라인 후면과 1호 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등)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06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3,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북측 부출입구, 교차로, 문주, 경비실, 주차차단기 등이, 주동 동측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등이, 주동 남측 지하 주민공동시설 연결 계단 등이, 주동 어린이놀이터, 한전 시설물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4호 라인 1층 필로티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호 라인 1층 필로티 전면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천정고 2.7m 확보를 위해 구조물 일부가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차량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호 라인 서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호 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 3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등)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07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 서측 부출입구, 교차로, 문주, 경비실, 주차차단기, 주차장입구, D.A 등이, 주동 북측 외부도로, 외부계단, 주민운동시설, 한전 시설물 등이, 주동 동측 외부 원총녹지, 복합용지 등이, 주동 서측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주동 북서측에 차량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주차장 출입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4호 라인 서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호 라인 후면과 4호 라인 측벽 인근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등)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08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주동 서측 둘봄센터, 관리실(관리사무소), MDF, 방재실, 주민공동시설 썬큰, 주민공동시설 외부계단,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휴게공간 등이, 주동 동측 외부 원총녹지, 복합용지, 외부 연결 계단등 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4호 라인 서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 2호 라인 후면과 4호 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호 라인 필로티 내측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등)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세대의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09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주동 서측 주민공동시설 썬큰, 주민공동시설 외부계단, 수경시설, 휴게공간 등이, 주동 동측 외부 원총녹지, 복합용지 등이, 주동 남측 외부 어린이공원, 외부 연결계단,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문주, 드롭오프존(맘스스테이션), 경비실, 지하주차장 입구, 외부도로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4호 라인 북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 2, 3호 라인 후면과 4호 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410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측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1호 라인 1층에는 둘봄센터, 2호 라인 1층에는 관리실(관리사무소), 3호 라인 1층에는 MDF/방재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3, 4호 라인 1층 전면으로 수영장 천정고 확보를 위해 구조물 일부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주동 서측 어린이놀이터 등이, 주동 동측 지하 주민공동시설 썬큰 등이, 주동 남측 수경시설, 휴게공간, 지하 주민공동시설 썬큰 및 계단, 지하 주민공동시설 연결 엘리베이터, 연결계단 등이, 주동 북측 지하 주민공동시설 연결 계단,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호 라인 우측벽으로 지하 주민공동시설 연결 계단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호 라인 북측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 2, 3호 라인 후면과 1호 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의 마감재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정, 벽, 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4A-1, 94A-1, 101A-1, 111A-1 타입은 안방 드레스룸창이 낮은창(재광창 미만 크기)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조망 등이 타 세대보다 간섭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4A, 94A-1, 111A, 111A-1 타입은 둘출형발코니가 설치되며, 둘출형발코니 이용시 단지 내 입주자로 인한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전체동(10개동)의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주택형의 기본 천정고는 1~3층 2.5m, 4층~최상층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의 천정고는 1~3층기준 2.5m임)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 (최하층 세대 및 최하층 세대 하부가 필로티일 경우 당해층 피난구 설치 제외)에 따른 소음들이 생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기실은 주동 및 단열계획에 따라 세대마다 크기가 상이하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와 하향식 피난구는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 환기 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및 탑입별 발코니 확장 유무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발코니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 사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가 미시공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텁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욕실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 됨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음. ■ 모션감지 센서로 작동되는 센서 탑입의 절수기 패달이 설치될 예정으로 바닥면에 절수기 패달이 노출되지 않음. ■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 일부세대 현관문에 차압측정을 위한 차압측정공이 시공될 수 있으며, 현관 천정에 차압감지를 위한 차압감지관 커버가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세대의 공용부분에는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임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흘통,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창호 프레임의 색상은 외측은 유색, 내측은 백색으로 시공될 예정임(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실외기실 루버창은 외부도장과 연계해서 일부세대에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돌출형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돌출형발코니 세대는 겨울철 실외온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람 ■ 외부 돌출형발코니 내 우수관이 외부 노출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재질은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난간대 및 외부마감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원층(4층) 세대가 돌출형발코니 지붕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원층세대의 거실난간을 거실창호에 설치하여 돌출형발코니 지붕으로 출입이 불가함) ■ 1층 세대의 돌출형발코니 주변 외부 조경공간은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난간대를 적용하여 분리할 예정임 ■ 3동 1,2호라인 2층 세대의 돌출형발코니 공간의 밖은 1층 어린이집 지붕공간으로 진출입이 불가하고,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난간대를 적용하여 분리할 예정임. ■ 돌출형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소방법 등)에 적합한 기준에 의거해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당사는 돌출형발코니 공간에 별도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부위인 안방발코니 내측은 22mm 복층유리 이중창, 외측은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고, 주방 발코니 외측은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 내측(발코니2(보조주방))은 ABS 목문이 설치예정임(설치부위에 따라 새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발코니 내측에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기타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새시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비확장시 발코니 확장 선택시와 새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새시는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항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텐텐박스의 깊이, 형태·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의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マイ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マイ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マイ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확장 및マイ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상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하부층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확장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 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탑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세대는 확장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u>발코니 비확장세대는 확장 세대와 다르게 가구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 제공되지 않음</u> ■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할 수 없음. ■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호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홈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설비이용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지	기계환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풍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천장에 기계환기설비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우수입상관, 배수입상관, 선호통, 드레인 등의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를 위한 선호통 및 트렌치 등이 건물 외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주택형 세대위치별 설치위치는 상이함 ▪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소방고가수조), (공동주택) 건물형태, 위치 등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개소·사양은 달라 질 수 있음.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실외기실 상부에는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노출설치되어 설치됨 ▪ 기계환기설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음 ▪ 기계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의 교체비용은 입주자부담임 ▪ 엘리베이터, 동출입구 공기청정 시스템 등의 이용시 사용요금이 발생되어 공동 전기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청정공기 급배기 시스템 및 엘리베이터, 동출입구 공기청정 시스템 등의 헤파필터는 추후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함 ▪ 에어컨 가동시 필히 실외기실 루버창을 열고 사용해야하며 실외기실 루버창이 닫힌 상태에서 에어컨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입주자 부주의에 의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여름철 에어컨 작동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을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람(실외기 루버창의 외측면은 주동 입면 색상과 연계하여 결정되므로 내외부색상이 달라질 수 있음)
견본주택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세대를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비확장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94A주택형 천정고는 2.5m(1~3층 세대 기준)로, 111A주택형 천정고는 2.5m(1~3층 세대 기준)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쳐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해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의 경우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음향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시공 시 미설치됨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고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총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총 설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개별난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 92%이상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규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24,571,171,863	공사비 (51)	철근콘크리트 공사	55,063,157,773	공사비 (51)	위생기구설비공사	1,294,797,421
	기간이자	669,673,215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658,470,831
	필요적 경비	1,130,273,906		조적공사	3,088,212,278		가스설비공사	631,791,572
	그 밖의 비용	14,971,558,623		미장공사	3,166,484,403		자동제어설비공사	213,372,507
토목 (13)	토공사	2,145,391,389		단열공사	2,029,651,603		특수설비공사	42,539,780
	흙막이공사비	-		방수·방습공사	1,552,843,835		공조설비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목공사	2,575,284,953		전기설비공사	9,992,525,663
	옹벽공사	51,940,822		가구공사	1,605,499,304		정보통신공사	3,051,038,149
	석축공사	467,464,719		금속공사	1,006,631,452		소방설비공사	6,476,234,542
	우수·오수공사	822,391,735		지붕 및 흙통공사	148,909,751		승강기공사	1,935,664,384
	공동구 공사	-		창호공사	6,209,358,091		일반관리비	11,406,639,674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1,706,388,531		이윤	13,390,403,095
	도로포장공사	740,152,918		타일공사	2,588,732,984		설계비	2,284,115,861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82,238,817		돌공사	361,206,273		감리비	5,177,329,462
	정화조시설공사	-		도장공사	1,474,485,167		일반분양시설 경비	29,207,267,043
	조경공사	3,796,900,213		도배공사	946,547,581		분담금 및 부담금	3,275,311,475
	부대시설공사	949,225,053		수장공사	1,682,751,652		보상비	-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6,557,697,151		주방용구공사	1,070,333,167		기타 사업비성경비	55,061,545,580
	가시설물공사	2,118,402,539		그 밖의 건축공사	6,883,467,287		그밖의 비용(1)	20,837,593,530
	지정 및 기초공사	6,343,080,926		급수설비공사	3,218,059,426		합계	331,559,300,000
	철골공사	-		급탕설비공사	2,903,935,090			
				오배수설비공사	1,923,154,941			

* 단열공사 비용은 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등에 포함되어 있음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 목		결정금액(원)	산출 근거(인정/불인정/조정)
택지가산비	택지대금 기간이자	710,770,85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말뚝박기 공사비	15,563,414,67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326,944,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1,199,638,47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합 계	17,800,768,006	
건축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1,481,688,59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인텔리전트설비	8,268,150,11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2,835,204,11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4,167,341,96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1,091,822,13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4,218,663,36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합 계	22,062,870,280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 고
건축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016,723,600	부가세 포함
전기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826,749,000	
소방 / 통신	유한회사 이에프	654,5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237,845,350,000원	제 05612022-101-00074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에게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별도계약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비 고
법 인 명	에스아이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파건설	주식회사 첨단건설	우미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4589193	200111-0443998	200111-0443964	205211-0001385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서울-주택2012-0018	광주-주택2015-0178	광주-주택2015-0175	전라남도-주택2004-003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43-877-8020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79	https://es1.lynn.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